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3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824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71,152,5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30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2003. 4. 17. 설립된 법인으로 2009. 4. 6.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redacted]호, [redacted]호, [redacted]호, [redacted]호, [redacted]호, [redacted]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2009.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8.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다.

호수	과세표준(원)	면적(㎡)		점유 · 사용자
		토지	건물	
505호	428,026,040	23.18	542	원고의 [redacted]
605호	581,264,640	31.47	736	주식회사 [redacted]
705호	1,115,136,000	60.37	1,412	주식회사 [redacted]
1005호	581,632,000	31.49	736	원고의 회의실 · 교육장
1305호	1,208,656,000	60.37	1,412	원고의 서부지역본부
1405호	553,895,500	60.37	1,412	[redacted] 주식회사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험영업 지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4. 5. 30. 원고에게 당초 취득가액 4,468,610,18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78,744,400원, 가산세 66,957,650원, 지방교육세 45,565,510원 합계 291,267,5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4. [redacted]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redacted]시는 2014. 1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등록세 등의 과세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30

등록세 171,152,5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게 한 등록세 부과처분 중 원고의 서부지역본부, 서울제휴사업단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회의실 및 교육장의 면적에 대한 부과처분은 원고의 서부지역본부, 서울제휴사업단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취소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 원고는 2015. 2. 25. 조세심판원에 위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이 사건 부동산 중 605호, 705호, 1405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redacted]판매, 주식회사 [redacted]프, [redacted]대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GA 대리점"이라 한다)는 원고의 지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GA 대리점이 원고의 지점이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점의 설치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GA 대리점들의 설립시기, 본점 주소는 아래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30

구분	설립시기	본점 주소(변경 내역 포함)
주식회사 [redacted]판매	2009. 8. 21.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redacted]타워3차 [redacted]호 →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redacted]층 →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redacted]동 [redacted]호([redacted]동[redacted]가, [redacted]시티) →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redacted]동 [redacted]호([redacted]동[redacted]가, [redacted]시티)
주식회사 [redacted]프	2011. 10. 6.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 [redacted]동 [redacted]호 → 이 사건 부동산 중 [redacted]호 → [redacted]시 [redacted]동 구 [redacted]로 [redacted]호 →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호
[redacted]대 주식회사	2012. 10. 10.	이 사건 부동산 중 [redacted]호

2) 주식회사 [redacted]판매는 2009. 9. 30.부터 2013. 1. 11.까지 원고를 포함한 27개 보험사와, 주식회사 [redacted]프는 2011. 12. 23.부터 2013. 5. 29.까지 원고를 포함한 11개 보험사와, [redacted]대 주식회사는 2012. 11. 9.부터 2012. 11. 23.까지 원고를 포함한 2개 보험사와 각 보험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redacted]매와 주식회사 [redacted]프의 보험사별 보험 판매 실적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주식회사 [redacted]매[1]	원고	[redacted]상	[redacted]험	기타	판매액 총계
	262,882,540	26,437,377,419	25,465,652,357	100,534,309,566	152,700,221,882

주식회사 [redacted]프[2]	원고	[redacted]명	[redacted]명	[redacted]명	[redacted]재	판매액 총계
	62,883,184	6,110,358	1,877,011,771	197,150,505	93,850,882	2,237,006,700

3) 원고와 주식회사 [redacted]매가 체결한 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의 내용, 원고와 이 사건 GA 대리점들이 체결한 영업지침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제2조(위탁업무)
대리점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② 보험료의 수령과 보험료 영수증의 관리 및 수금확인서 징구와 실효예고통지
-중략-
제7조(수수료)

1) 주식회사 [redacted]매의 본점 및 지점 판매 합계 실적(2014년 상반기)이다.
2) 주식회사 [redacted]프의 본점 실적(2013년 상반기)이고, 당시 지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30

① 신청인은 대리점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하여 신청인이 정한 '수수료 및 영업지원기준' 및 '부속약정서'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0조(보험모집관련 자료작성 등)** ① 대리점(임직원, 유자격 및 모집사용인 포함)이 보험모집에 사용하는 문서, 도화 등은 신청인이 제작 · 배포한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제작하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는 반드시 신청인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하고, 대리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 원고 대리점: 주식회사 글로벌금융판매
부속약정서 **제3조(대리점의 경비)** 대리점 업무에 관한 모든 비용은 대리점 자체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사무실, 집기, 비품 등의 대여)** ① 신청인은 대리점 계약 당시의 대리점 형태에 따라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대여 및 회수할 수 있으며 대여한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은 모두 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③ 신청인이 제공하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대리점이 무실적이거나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정하는 사무실사용료 징수기준에 의거하여 사무실사용료를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임차지원시 영업물량)** 사무실 지원시 대리점은 신청인이 제시한 영업물량을 달성하여야 하며, 영업물량 미달 시 신청인의 영업규정장의 제재조항을 따른다. 신청인: 원고 대리점: 주식회사 글로벌금융판매
영업지침 원고가 이 사건 GA 대리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상품 판매수수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비용 상당액의 1.7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redacted]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그 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30

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GA 대리점들은 원고의 지점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주식회사 [redacted]판매는 본점이 별도로 존재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redacted]호를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redacted]호에서 운영되고 있던 주식회사 [redacted]매의 지점을 원고의 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지점이 동시에 두 회사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는 셈이 된다. 또한, 비록 주식회사 [redacted]매의 본점 및 지점 전체의 판매 내역이기는 하나 주식회사 [redacted]매가 원고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한 것은 아니었고 2014년 상반기 전체 보험상품 판매 내역 중 원고의 보험상품이 차지하는 부분은 0.17%(262,882,540원/152,700,221,882원)에 불과했다.

② 주식회사 [redacted]프는 별도의 지점을 운영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중[redacted]호에 본점을 설치한 적은 있으나, 원고의 보험상품 외에 다른 회사의 보험상품도 판매하였고, 2013년 상반기 전체 보험상품 판매 내역 중 원고의 보험상품이 차지하는 부분은 2.81%(62,883,184원/2,237,006,700원)에 불과했다.

③ [redacted]대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redacted]호에 본점을 설치한 적은 있으나 그 당시 별도의 지점을 운영한 적은 없었고, 원고의 보험상품 외에 다른 회사의 보험상품도 판매하였다.

④ 이 사건 GA 대리점들이 원고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30

나 설령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GA 대리점들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부속약정서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GA 대리점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 지원을 받으면서 원고가 제시한 영업물량을 달성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달리 원고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기로 하는 조항은 없었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GA 대리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상품 판매수수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비용 상당액의 1.7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는바, 이러한 조항은 원고의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GA 대리점들이 원고의 보험상품만을 독점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GA 대리점들은 원고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GA 대리점들의 원고 보험상품 판매 비율은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GA 대리점들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GA 대리점을 원고의 지점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30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30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 구 지방세 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 설치 ·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 · 설치 ·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 설치 · 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끝.